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6 민 사 부

###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6나2084895 손해배상(기) 2016나2084901(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강경탁 외 63명, 이하 원고는 별지 명단 기재 순번으로 표시한다.] 원고 1~4, 6, 7, 9~22, 24~31, 34~44, 46~57, 59~6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담당변호사 신명근, 임영환)
피고, 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 3(남창동) 대표이사 박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광, 김진환, 김성욱, 이인환, 이정석, 이연우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0675, 2015가합537153(병합) 판결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 정 사 항

- 원고 1 내지 63과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484 손해배상 등 사건이 확정될 경우(대법원에서 판결 또는 화해권고 결정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되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하 위 사건의 확정판결 등을 '선행판결 등'이라 한다)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 가. 선행판결 등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 1 내지 63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선행판결 등의 확정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1 내지 63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 나. 선행판결 등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 등이 확정될 경우, 원고 1 내지 63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원고 64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의 표시

### 1. 청구취지

피고는 코리아크리딧뷰로 주식회사(이하 'KCB'라 한다)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청구원인

가.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KCB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KCB 소속의 직원(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박시우 등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들을 포함

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임의로 저장 후 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하였다.

1) 박시우는 2010. 4. 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피고의 본사 건물에서 FDS 개발 작업을 하면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피고 회원 1,023만 명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몰래 유출하였다.

2) 박시우는 2013. 12.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접속한 다음 피고 회원 약 2,689만 명의 고객 정보 등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나오는 방법으로 몰래 유출하였다.

다. 위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민법 제750조나 제756조 제1항 또는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KCB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8. 8. 13.

재판장      판사      이      정      석



판사      손      병      원



판사      방      응      환



